

1. 한국문학회 회칙 개정 건

현행	수정
제 8조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회 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 회 장 약간 명 총무이사 2명	제 8조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회 장 1명 (삭제) 부 회 장 약간 명 총무이사 2명
제9조 본 학회의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평의원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.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으며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	제9조 본 학회의 회장은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으며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10조 임원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, 통괄하며 총회와 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②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연구이사 중 1인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 ④ 이사는 임원회의를 구성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한다. ⑤ 감사는 년 1회 이상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,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.	제10조 임원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, 통괄하며 총회와 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② (삭제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연구이사 중 1인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 ④ 이사는 임원회의를 구성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한다. ⑤ 감사는 년 1회 이상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,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.

→ 2017년 12월 16일(토) 총회 때 개정된 회칙은 회원들에게 온·오프라인(『한국문학논총』 77집 게재 및 홈페이지 안내 등)으로 공고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.

2.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및 논문심사 규정 개정 건

현행	수정
제4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 ① 편집위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,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, A.B급 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500%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. * 연구실적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. ㉠ 등재(후보)학술지 논문 : 100% ㉡ A.B급 학술지 논문 : 80% ㉢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: 120% ㉣ 개인 단독저서 : 200% ㉤ 공저(5인 이내), 번역서, 편저 : 100%	제4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 ① 편집위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,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, 국내일반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500%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. * 연구실적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. ㉠ 등재(후보)학술지 논문 : 100% ㉡ 국내일반학술지 논문 : 80% ㉢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: 120% ㉣ 개인 단독저서 : 200% ㉤ 공저(5인 이내), 번역서, 편저 : 100%
※ 논문심사 규정에서도 "A.B급 학술지"를 "국내일반학술지"로 수정 ※ 용어 "한국학술진흥재단"을 "한국연구재단"으로 수정	

3. 한국문학회 학술상 운영 규정 개정 건

현행	수정
<p>제 6 조(심사 범위)</p> <p>(1) 논문 : 심사대상은 전년도 12월, 당년도 4월과 8월 간행의 『한국문학논총』에 게재된 회원의 논문 중에서 현대문학 1편, 고전문학 1편을 선정한다.</p> <p>(2) 저서 : 심사 대상은 단독 저서이어야 하고, 회원이 수상 요건을 갖추어 학회에 요청할 때 심사가 이루어진다.</p> <p>제7조(예우)</p> <p>(1)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품을 수여한다.</p> <p>(2) 시상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표하고, 대외 매체에도 정보를 제공한다.</p> <p>(3) 필요한 경우 학회 차원에서 수상자의 학술 활동에 협조한다.</p> <p>제 8 조(시상시기) : 학술상은 동계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.</p>	<p>제 6 조(심사 범위)</p> <p>(1) 논문 : 심사대상은 전년도 8월과 12월, 당년도 4월 간행된 『한국문학논총』에 게재된 회원의 논문 중에서 현대문학 1편, 고전문학 1편을 선정한다.</p> <p>(2) 저서 : 심사 대상은 단독 저서이어야 하고, 회원이 수상 요건을 갖추어 학회에 요청할 때 심사가 이루어진다.</p> <p>제7조(예우)</p> <p>(1)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품을 수여한다.</p> <p>(2) 시상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표하고, 대외 매체에도 정보를 제공한다.</p> <p>(3) 필요한 경우 학회 차원에서 수상자의 학술 활동에 협조한다.</p> <p>제 8 조(시상시기) : 학술상은 하계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.</p>